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19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특별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구 B 도로 148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9. 4. 3. C

1) 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D, E이 2023. 5. 9.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 원고가 2023. 6. 14. 피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16.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처분은 2023. 6. 16.자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2003. 7.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대습상속인인 손자 F, G(각 상속지분 0.5/5.5), 배우자 H(상속지분 1.5/5.5), 자녀 D, E, 원고(각 상속지분 1/5.5)가 있었고, 당시에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다. H은 2022. 11. 14. 사망하였고(이하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원고, D, E(각 상속지분 1/3)이 있다.

라. 원고와 D, E은 2023. 5. 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1,430,000원/㎡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577,577,000원(= 1,430,000원/㎡ × 1481㎡ × 1.5/5.5)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상속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는 2023. 6. 14. 피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16. 거부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 C은 2003. 7. 18.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또한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5/5.5 지분을 상속받은 고인이 이미 사망한 이상 고인의 권리의무도 사라졌음에도, 이미 사망한 고인이 C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 고인을 피상속인으로 확대해석하여 원고 외 2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 판단

1) C이 2003. 7. 18. 사망하면서 C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C의 배우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인 고인이 5.5분의 1.5 지분, 원고, D, E이 각 5.5분의 1 지분을 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민법 제187조 전단에 의하면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1.5/5.5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2003.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5/5.5 지분을 취득하였다.

2) 고인이 2022. 11. 14. 사망하였는데, 원고, D, E이 고인의 상속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인의 지분 1.5/5.5는 원고 외 2인이 각 0.5/5.5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 원고 외 2인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1.5/5.5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위 취득세에 대한 경정신청,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 등을 거치면서도 원고 등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원고 외 2인이 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5/5.5 지분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